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지원 운영요령

제정 2009. 01. 1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 2호
개정 2009. 07. 0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24호
개정 2011. 02. 1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7호
개정 2011. 11. 1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31호
개정 2013. 07. 3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34호
개정 2014. 07. 0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3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지원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지원(이하“협업사업지원”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업”이란 여러 개의 기업이 제품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공상 융합형 협업”은 국내 농림수산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참여업체가 되는 것을 말함)
2. “협업체”란 협업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협업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협업계약을 통해 결성한 기업군을 말한다.
3. “추진주체”란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협업체의 대표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참여업체”란 협업체에 참여하여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단, 연구전문기업에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연구법인을 포함한다.
5. “수행업체”란 협업체에 참여하여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추진주체와 참여업체를 말한다.
6. “협업정보시스템”이란 협업사업 관리 및 협업정보 제공 등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7. “지방협업기업협의회”란 지역내 협업 활성화 촉진, 협업지원정책 등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해 지역내 중소기업 및 협업관련기관으로 결성된 단체를 말한다.
8. “협업사업심의위원회”란 협업체의 협업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9. “관리기관”이란 협업사업지원의 관리 및 협업사업계획의 평가·심의·점검 등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방중소기업청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10. “전담기관”이란 협업사업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업 전문인력 양성, 협업사업계획 승인 사업자 지원, 협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협업 성공사례 발굴·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말한다.
11. “지원기관”이란 자금, 보증, 평가 등 협업사업계획의 평가 및 추진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협업관리자(Project Manager, PM)”란 승인협업체의 사업착수 확인, 진행 중 협업사업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중소기업) ①협업사업지원의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연구전문기업에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연구법인을 포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등 부적합업종영위 기업
2.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3.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4.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제4조(적용범위) 협업사업지원(이하 “사업지원”이라 한다)과 협업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 및 사후관리업무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제 2 장 협업사업의 추진체계

제5조(협업사업심의위원회) ①관리기관의 장은 협업사업계획 승인여부 심의 등을 위해 협업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심의
2.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심의
3. 협업사업계획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4. 협업자금 융자지원 심의
5. 사업계획이 승인된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
6. 기타 중소기업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외로 구성하고, 관리기관의 과장(지방사무소는 ‘소장’으로 한다)을 위원장으로 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팀장,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팀장 또는 지점 팀장, 공인회계사 중 당연직 2명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의 장은 협업사업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심의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1. 관리기관 직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지원 과장
3. 해당지역 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 팀장 또는 지점 팀장
4. 해당지역 금융기관 지점 팀장
5. 중소기업중앙회 지회장 등 지역내 협업관련기관 팀장
6. 지방농업기술센터전문가
7. 협업관련전문가

③심의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관리기관) ①중소기업청장은 협업사업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접수, 평가 및 심의
2. 협업사업계획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3.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신청서 접수 및 심의
4. 사업계획이 승인된 협업체내 수행업체에 대한 이행실적조사
5.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및 심의
6. 심의위원회 운영
7. 사업지원 제도개선 과제 발굴

8. 지역내 중소기업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
9. 사업계획이 승인된 수행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10. 그 밖에 사업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중소기업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등에 대한 자문 및 중소기업간 협업 정보 교환 등을 위해 지역내 중소기업, 협업관련기관 등으로 민간 자율조직인 지방협업기업협의회를 결성·운영토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전담기관)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협업정보 제공 등을 위한 협업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 사업계획이 승인된 협업체에 대한 원활한 사업 수행 지원
3. 협업전문인력 양성 및 지도·연수
4. 협업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및 국내외 교류회 개최
5. 사업지원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6. 협업수요조사의 실시, 사업계획이 승인된 협업체의 협업유형 및 성과분석
7. 협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협업관리자(PM) 제도의 운영
8. 그 밖에 사업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협업관리자) ①중소기업청장은 협업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업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이 승인된 협업체의 애로사항 발굴 및 사업 조언
 2. 협업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 및 업무지원
 3. 승인 협업체 내 수행업체간 갈등 및 분쟁 조정
 4. 협업 촉진을 위해 관리기관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사업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② 협업관리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업관리자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 3 장 사업계획의 승인

제9조(협업체 참여업체 자격) ①협업체내 수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협업체 내 수행업체는 제품개발, 생산, 마케팅, 물류, 디자인 등 전문기능서비스 중 어느 하나를 제공할 수 있을 것

②사업계획이 승인된 협업체내 수행업체도 새로이 구성하는 협업체에 참여할 수 있다.

③사업계획 승인 취소의 귀책사유가 있는 수행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④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의 평가결과 및 심의위원회의 재심의결과 미승인 된 업체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⑤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은 협업체의 수행업체 중 중소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에 한해 협업체가 생산하는 제품 또는 관련서비스를 구매하는 수요자로서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이 요령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지원대상으로는 제외한다.

제10조(사업계획 신청자격) ①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승인신청자”라 한다)는 협업체내 수행업체 중 추진주체이어야 한다.

②승인신청자가 구성한 협업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할 것
2. 수행업체간 기능별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을 것
3. 수행업체의 권리, 의무와 사업운영방안에 대해 수행업체의 장이 확인한 협약서(계약서) 또는 공증을 필한 내부규약이 있을 것
4. 수행업체간의 계약이 수직적 하청구조 방식이 아닌 수평적 협업 형태(공동투자, 공동 수익배분)의 계약일 것
5. 협업체내 수행업체가 동의하는 협업사업계획이 있을 것

제11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승인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협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목표, 참여업체와 추진주체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내용 및 실시기간, 참여업체가 제공한 설비·기술 등 경영자원, 자금조달 방법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2. 이 지침 제17조에 따른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수행업체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업자금 융자신청서 상의 구비 서류
3. 농공상 융합분야 협업을 추진하는 신청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협업 사

업계획 승인 신청서”의 협업 사업명에 별도로 “농공상 융합분야 협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신청자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서류보완을 요청받은 승인신청자는 서류보완 요청을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신청서를 보완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신청자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7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승인신청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

⑤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서류 보완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승인신청자의 경우 승인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의 평가) ①관리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협업사업의 추진 필요성 및 협업체 구성의 적절성
2. 협업사업의 안정성
3.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4. 사업추진능력
5. 그 밖에 협업사업 기대효과 등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 중 3인 이내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 실무담당자
2. 중소기업진흥공단 실무담당자
3.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 실무담당자
4. 해당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담당자
5. 기술성·사업성 평가에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 또는 협업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 중 관리기관의 장이 위촉 하는 자

③관리기관의 장은 평가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가단원중 1인을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평가단은 사업계획 참여업체 면담 및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한 후 별지3호 서식의 협업사업계획 평가보고서를 승인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관리기관의 장은 평가에 참여한 평가단원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

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평가수당(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건설 및 기타 분야의 고급기술자 노임단가)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협업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사업과 관계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소속의 평가 단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사업계획의 심의) ①관리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평가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평가단의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승인신청자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업계획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결정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 참석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사업과 관계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소속의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사업계획의 심의결과 통보)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 심의 결과를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신청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전담기관의 장,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결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승인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견이 있는 신청자(이하“이의신청자”라 한다)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의 재심의를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자를 평가한 평가단원 및 이의신청자를 심의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재심의 한 후 최종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 ①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이하 “승인사업계획”이라 한다) 협업체내 추진주체(이하 “승인사업자”라 한다)는 협업사업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협업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이하 “변경승인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승인기간 완료일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참여업체가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목표
2. 수행업체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수행업체의 변경
4. 사업계획 내용 및 실시기간
5. 수행업체가 제공한 설비·기술 등 경영자원
6. 수행업체의 자금조달 방법

7. 그 밖에 사업계획에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참여업체의 주소 변경 등 협업사업계획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승인 결과를 승인사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전담기관의 장,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결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승인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승인서 발급)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협업사업계획 심의결과 중소기업간 협업사업계획 승인서(이하 “승인서”라 한다) 발급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업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승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승인신청자의 승인신청서
2. 사업계획 평가보고서
3. 사업계획 심의평가서

②사업계획의 승인 기간은 승인서 발급일로부터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완료일까지로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승인사업계획의 변경승인으로 승인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협업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승인서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서 원본은 중소기업청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1.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
2. 사업계획 변경승인 심의평가서
3. 승인서 원본

④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인서 발급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

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발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리기관의 장 및 승인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7조(협업자금 지원)** ①관리기관의 장은 승인사업계획의 수행업체에 대하여 원활한 협업사업 수행을 위해 협업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위하여 세부규정을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③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협업자금 용자계획이 있는 수행업체는 사업계획 승인 평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업자금 용자 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제18조(연계지원) 관리기관의 장은 승인사업계획의 수행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대하여 지원하거나 해당 지원기관의 장에게 우대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보증지원 사업
2. 자금(시설·운영)지원 사업
3. 컨설팅지원 사업
4. 정보화촉진지원 사업
5. 기술개발지원 사업
6. 투자유치지원 사업
7. 판로 및 수출지원 사업
8. 그 밖에 사업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업

제19조(이행실적조사 등) ①관리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의 승인통보일로부터 6개월마다 승인사업계획의 수행업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승인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개월마다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승인사업계획 추진 현황
2. 승인사업계획의 이행 여부 및 실적
3.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4.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사업계획 이행 여부 및 실적 등을 조사하려는 때에는 그 승인사업자에게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실적조사 등을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지 제8호서식의 이행실적 조사서를 작성한 후 전담기관의 장 및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이행실적 조사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변경 및 중단 권고) 관리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이행실적조사 결과 승인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승인사업자에게 승인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이행촉구 및 경고) 관리기관의 장은 승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촉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사업계획을 추진하지 아니한 경우
2. 이행실적 조사시 거짓으로 실적을 제공한 경우
3. 이행실적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4. 제17조에 따라 지원된 협업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사업계획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2조(분쟁의 조정) 관리기관의 장은 승인사업계획 수행업체 상호간에 승인사업계획 실시에 따른 의견대립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승인사업자에게 이의 조정을 권유할 수 있다.

제23조(승인취소) ①관리기관의 장은 승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승인사업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수행업체가 승인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는 청문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15조에 따른 변경승인 없이 승인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3. 휴업·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6개월 동안 승인사업계획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사업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여부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 취소를 통보받은 경우 승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참여업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제24조(승인사업계획 완료보고서 제출) ①승인사업자는 승인사업계획의 승인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중소기업간 사업계획 완료보고서를 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간 협업사업계획 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현장에 출장하여, 사업성과 등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협업사업 추진성과 요약서를 작성한 후, 제출받은 중소기업간 협업사업계획 완료보고서와 함께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완료점검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공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종합 성과분석) ①중소기업청장은 승인사업자의 승인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실적 등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종합분석 및 승인사업계획의 협업 유형별 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승인사업자의 추진성과 등을 종합 분석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칙

제26조(비밀유지 의무) 관리기관·전담기관의 직원, 평가단원 및 심의위원회 위원 등은 사업계획을 통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지도·감독) 중소기업청장은 전담기관 및 지원기관의 장에게 협업사업의 운영·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업사업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관리운영비의 지급) 중소기업청장은 이 지침에 의한 협업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07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신청번호				
협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				
협업사업명	(농공상 융합분야)*			
사업기간	20 ~ 20 (개월)			
추진주체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홈페이지	http://		
총괄책임자	대표자명			
	성명		전화	
	소속/직위		F A X	
	전자우편 (E-mail)		핸드폰	
	업체명	대표자	전화	협업참여분야
참여업체				
참여업체				
참여업체				
협업자금지원	신청계획	<input type="checkbox"/> 있음(백만원) <input type="checkbox"/> 없음		
	신청시기	<input type="checkbox"/> 동시신청 <input type="checkbox"/> 추후신청(년 월)		
보증지원	<input type="checkbox"/> 기술신용보증 <input type="checkbox"/> 신용보증 <input type="checkbox"/> 불필요			
<p>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간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며,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의 무효, 승인 취소 등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00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p>				
<p>※ 첨부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목표, 참가업체와 추진주체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내용 및 실시기간, 참여업체가 제공한 설비·기술 등 경영자원 및 자금조달 방법을 포함한 협업사업계획 1부 - 제17조제3항에 따라 동시에 진행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업자금 융자신청서 및 신청서 상의 서류 				

* 농공상 융합분야 협업사업계획일 경우 표시

【별지 제1호 서식 붙임1】

협업 사업 계획서

20 . .

제출자 (추진주체명)	
----------------	--

I

협업사업계획 요약서

1. 사업 개요

협업사업명		
사업기간		20 . . . ~ 20 . . .
추진주체		
참여업체		
사업비 (백만원)	현 금	
	현 물	
	합 계	

2. 사업의 목표 및 내용

사업 목표	
사업 내용	

3. 기대효과(기대수익 등)

--

II

협업체 구성현황

1. 협업체 수행업체 현황

구 분	추진주체	참여업체	참여업체	참여업체
협업참여분야				
업 체 명				
대 표 자				
업 종				
위치 (본사 및 분사)				
설 립 년 월 일				
자산 및 자본 (백만원)				
상 시 인 력(명)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부 채 비 율(%)				
자기자본비율(%)				
연 락 처	전화			
	FAX			
	주 소			
	전자우편 (E-mail)			
	실무 책임자	성명		
소속				

* 실무연락책임자의 소속부서, 성명, 전화, 주소 등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 상시종업원수 : 전년도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명시된 종업원수

* 부채비율(%) : 부채총계/총자본 × 100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 × 100

2. 협업체 운영 추진체계

※ 협업체 수행 업체의 협업참여분야에 따른 역할에 대해 그림으로 표시하고 구체적으로 기술

Ⅲ

협업 사업 추진계획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내용

기술성

국내외 관련 기술현황

기술의 우수성 및 독창성

기술의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 시장성

국내·외 시장규모

국내·외 시장특성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시장진출계획(마케팅계획 등)

※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기술성 및 시장성은 필요에 따라 첨삭가능

3. 사업 목표

① 추진주체 (업체명 :)

매출액 향상계획

(단위 : 백만원)

년차별	당해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수출		수출		수출		수출
매출액								

주) 당해년도는 사업계획승인 신청년도이고, 1차년도는 승인후 다음연도

투자비 절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별투자시(A)	협업추진시(B)	투자비절감비율(A-B/A)
투자비			

매출원가절감 계획

(단위 : %)

구 분	협업 추진전(A)	협업 추진후(B)	원가절감비율(A-B/A)
매출원가비중			

주) 매출액대비 매출원가비중(%)을 추진전과 추진후로 비교

② 참여업체 1 (업체명 :)

매출액 향상계획

(단위 : 백만원)

년차별	당해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수출		수출		수출		수출
매출액								

주) 당해년도는 사업계획승인 신청년도이고, 1차년도는 승인후 다음연도

투자비 절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별투자시(A)	협업추진시(B)	투자비절감비율(A-B/A)
투자비			

매출원가절감 계획

(단위 : %)

구 분	협업 추진전(A)	협업 추진후(B)	원가절감비율(A-B/A)
매출원가비중			

주) 매출액대비 매출원가비중(%)을 추진전과 추진후로 비교

③ 참여업체 2 (업체명 :)

매출액 향상계획

(단위 : 백만원)

년차별	당해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수출		수출		수출		수출	
매출액								

주) 당해년도는 사업계획승인 신청년도이고, 1차년도는 승인후 다음연도

투자비 절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별투자시(A)	협업추진시(B)	투자비절감비율(A-B/A)
투자비			

매출원가절감 계획

(단위 : %)

구 분	협업 추진전(A)	협업 추진후(B)	원가절감비율(A-B/A)
매출원가비중			

주) 매출액대비 매출원가비중(%)을 추진전과 추진후로 비교

※ **협업사업계획 수행업체 전체를 작성**

4. 세부 추진일정

추진내용	세부 추진일정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세부 추진일정에는 추진내용별로 화살표 등을 사용하여 기간을 표시

IV	사업비 투자 계획
-----------	------------------

1. 총사업비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A)	자체자금	정부지원금(B)	비 율(B/A)
			%

2. 세부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자금 용도		구 분	규 모	자금투자		
				자체자금	정부지원금	소계
시설자 금						
운전자 금						
합 계						

3. 업체별 투자비 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업체명	공동이용부문			개별이용부문			총투자비			공동부문 분담비율 (%)
	자체 자금	정 부 지원금	계	자체 자금	정 부 지원금	계	자체 자금	정 부 지원금	계	
· · ·										
계										계

4. 자체 자금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업체명	총사업비 (A)	자 기 자 금				외부차입금 (정부제외)
		부동산	당 기 순이익	기 타	소 계(B) (조달비율,B/A)	
		※ 개인 : 대표자 또는 배우자 보유 ※ 법인 : 법인 또는 대표자 보유	※ 재무제표 확인금액	※ 예·적금 ※ 유가증권 ※ 기타 조달 가능한 자산 (임차보증금 등)		
계						

5. 정부지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업체명	소요금액	신청금액	담보종류	취급기관
추진주체		시설 : 운전 :	시설 : 운전 :		
참가업체		시설 : 운전 :	시설 : 운전 :		
		시설 : 운전 :	시설 : 운전 :		
계					

주1) 담보종류 : ① 신용, ② 신용보증서, ③ 기술신용보증서, ④부동산, ⑤기타 등으로 구분

주2) 취급기관 : 공단 또는 은행명과 지점명을 기재

【별지 제1호 서식 붙임2】

()협업사업 참여확인서										
기업현황	업체명		한글: _____			대표자		한글: _____		
			영문: _____					영문: _____		
	법인등록번호		_____							
	사업자등록번호		_____		설립년월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연락처	전화	대표자 : () - _____			담당자 : () - _____				
		휴대폰	대표자 : () - _____			담당자 : () - _____				
		E-mail	대표자 : _____			담당자 : _____				
		홈페이지	_____			FAX () - _____				
	소재지	본사	주소 : _____ 우편번호[-]							
		공장	주소 : _____					우편번호[-]		공장등록 <input type="checkbox"/> 등록, <input type="checkbox"/> 미등록
면적			대지: _____ m ²	용도지역:	(전용공업 공업 준공업상업주거)지역 기타지역()					
		공장: _____ m ²	소유	<input type="checkbox"/> 자가(소유자: _____), <input type="checkbox"/> 임차						
주생산품목		한글: _____			매출액		백만원			
		영문: _____			[수출액]		백만원(천불)			
				[주업종]		백만원(%)				
가동상황		월평균()일, 1일평균()시간			주거래은행		은행, 지점			
생산방식		자사제조()%, 외주가공()%			주문생산()%		시장생산()%			
종업원수		사무직 명, 기술직 명, 기능직 등 명, 합계 명			자본금		백만원			
자산총액		백만원		부채총액		백만원		자본총계		백만원
국세		신청월 현재 체납(개월)			지방세		신청월 현재 체납(개월)			
신자	소요자금	시설 : _____ 백만원			신청금액		시설 : _____ 백만원			
	담보	<input type="checkbox"/> 신용 <input type="checkbox"/> 신용보증서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input type="checkbox"/> 기타								
	보증기관	_____ 기금(재단) _____ 지점								
기업현황	해당참여분야(해당란에√표)	·제조()·R&D()·마케팅()·기타()								
	상시종업원수	_____ 명		최근 2년간 협업 경험		있음(), 없음()				
담당	업무담당자	부서 : _____		직위 : _____		성명 : _____				
위와 같이 협업사업에 참여함을 확인합니다.										
_____ 20 년 월 일 (대표) _____ (서명 또는 인)										
00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첨부서류	협업사업 수행업체 현황(별지 제11호 서식 붙임 3)									

【확인서 작성요령】

- ① 설립년월일: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일,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설립년월일은 개인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로 기재)
- ② 주요생산품목은 판매실적순에 따라 일반명으로 3개 이내 기재
- ③ 종업원수는 전년도 소득세징수액집계표(국민연금정산자료)에 명시된 종업원 수

【별지 제1호 서식 붙임3】

협업사업 수행업체 현황

1. 회사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설립년월일		홈페이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소유여부
본 사				자가, 임차
사업장	①			자가, 임차
	②			자가, 임차
업 종	(표준산업분류번호 :)			
생산품목				
주거래처				
사업규모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자본금 (백만원)			
	총자산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순이익 (백만원)			
	종업원수(명)			

- * 지원자가 회사인 경우에 한해 작성
- * 사업규모는 직전 3개년도를 작성

2. 회사연혁

년 월 일	내 용	비 고

* 회사설립,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업종변경, 합작투자, 증자, 법인전환, 공장이전, 사업승인, 포상, 등록사항 등의 내용 기재

3. 주요 경영·기술진 및 주주 구성

구 분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최종학력 (전공, 학위)	주요경력	소유주식 (%)
경영· 기술진						
주 주 구 성						

4. 조직현황

〈조직기구표〉

* 부서별, 과별 인원수를 기재(전담조직 운영형태 및 연구개발 인력형태도 표기)

5. 연구개발 현황

5-1. 연구개발 인력

성명	직위	최종학력 (전공·학위)	주요경력

5-2. 연구개발 실적

개발과제 및 내용	개발기간	사업규모 (소요자금)	비고 (개발자 표기)

* 신청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순서대로 기재

** 비고란은 과거 신청기업의 것, 대표자의 것, 주요 기술진의 것 표기

6-3. 산업재산권

종류	고안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자 (고안자)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자	전용 실시권자

* 1. 종류 : ①발명특허등록 ②실용신안등록 ③의장등록

2. 출원중인 경우 등록번호와 등록일난에 신청접수번호와 신청일을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협업사업계획 평가보고서

1. 일반현황

사업명			
추진주체		대표자	
참여업체		대표자	
참여업체		대표자	
참여업체		대표자	
총사업기간	20 . . ~ . . (개월)		

2. 조사현황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대담자			(인)
			(인)
			(인)
조사자			(인)
			(인)
			(인)
조사년월일	20 년 월 일	방문장소	

3. 평가의견

○ 협업사업의 필요성 및 협업체 구성의 적절성

○ 협업사업의 안정성

○ 협업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협업사업 추진능력

○ 기대효과 등

평가점수	
------	--

【붙임】

< 평 가 결 과 표 >

평 가 항 목			배 점		점 수	
대 항 목	중 항 목	소 항 목	점수	소계		
사업계획의 적정성 (95점)	협업사업의 필요성 및 협업체 구성의 적절성	협업사업의 추진 필요성 및 추진의지	15			
		협업체 구성의 적절성	15			
	협업사업의 안정성	협업사업의 안정성	10			
	협업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협업제품의 기술성 및 시장성	15			
		자금조달의 적정성	10			
	협업사업 추진 능력	생산 능력	10			
		마케팅 능력	10			
		연구개발 능력	10			
	기대효과(10점)			10		
	합 계			105		

【참고】

< 평가 배점표 >

평가항목	평 가지 표	평 점	점수	
협업사업의 추진 필요성 및 추진의지 (15)	○ 협업사업의 비전(5점)	0점	협업 후 기업의 비전이 없음	
		1점	협업 후 기업의 비전이 없으나, 협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성과 등 목표치 존재	
		2점	협업 후 기업의 비전이 존재하나, 협업과 관련성 없음	
		4점	협업 후 기업의 비전이 존재하고, 협업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기업의 비전과는 다름	
		5점	협업 후 기업의 비전이 명확히 존재하고, 협업을 통해 달성될 수 있으며, 현재 기업의 비전과 동일함	
	○ 협업사업 목표의 명확성 및 현실성(5점)	0점	협업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없음	
		1점	재무적 목표치는 존재하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없음	
		3점	재무적 목표치만 존재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 있음	
		4점	재무적, 비재무적 목표치는 존재하나,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없음	
		5점	재무적, 비재무적 목표치가 존재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있음	
	○ 협업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원(5점)	0점	협업사업의 추진을 위한 준비 전혀 없음	
		1점	협업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는 없으나, 수행업체 대표자의 추진의지 확고함	
		2점	추진주체는 준비되지 않았으나, 참여업체는 전담인원이 배정됨	
		3점	추진주체는 전담인원이 배정되었으나, 참여업체는 준비되지 못함	
		4점	추진주체와 참여업체 모두 전담인원이 배정됨	
5점		추진주체와 참여업체 모두 전담인원이 배정되어있고, 수행업체 모두가 참여하는 협업 사업관리팀을 구성할 예정		
협업체 구성의 적절성 (15)	○ 수행업체 요건의 적절성(4점)	0점	수행업체 구성을 위한 별도의 분석이 없음	
		1점	개략적 분석을 통해 수행업체가 갖춰야할 역량 정의 함	
		3점	수행업체가 갖춰야할 역량을 분석을 통해 정의하였으나, 적정업체를 찾기 위한 노력이 부족함	
		4점	수행업체가 갖춰야할 역량을 분석을 통해 정의하였으며, 최적의 업체로 협업체가 구성됨	
	○ 협업체 구성의 완결성(4점)	1점	일반기업으로만 협업체가 구성됨	
		3점	일부업체만 전문기업으로 협업체 가 구성됨	
		4점	수행업체 모두가 전문기업으로 협업체가 구성되어 있음	

	○ 외부 전문기관의 참여도(2점)	0점	외부 전문기관(대학·연구소 등)의 참여 없음	
		1점	참여 외부 전문기관 1개 이하	
		2점	참여 외부 전문기관 2개 이상	
	○ 수행업체의 협업사업 인지도(2점)	0점	수행업체가 협업에 대해 전혀 모름	
		1점	수행업체는 협업에 대해 알고 있으나, 자사 이외의 타 참여업체를 주요 고객으로 인식함	
		2점	수행업체는 협업에 대해 알고 있으며, 자사 이외의 타 참여업체를 동반자로 인식함	
	○ 협업체간 협약서의 완결도(3점)	1점	수행업체간 투자, 수익배분 등에 대한 계약서가 없음	
		2점	수행업체간 투자, 수익배분 등에 대한 계약서가 있음	
		3점	수행업체간 투자, 수익배분 등에 대한 계약서가 있으며, 공증을 받았음	
협업사업의 안정성 (10)	○ 부채비율(1.5) ※총부채/자기자본×100	0점	300 이상	
		0.5점	200 이상 ~ 300 미만	
		1점	100 이상 ~ 200 미만	
		1.5점	100 미만	
	○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2.5) ※ 영업이익/매출액×100	0점	3 미만	
		1점	3 이상 ~ 5 미만	
		1.5점	5 이상 ~ 7 미만	
		2점	7 이상 ~ 9 미만	
		2.5점	9 이상	
	○ 매출 증가율(3) ※ (당기 매출액/전기매출액-1)×100	0점	0 미만	
		1점	0 이상 ~ 20 미만	
		2점	20 이상 ~ 40 미만	
		3점	40 이상	
	○ 경영자 능력 및 신뢰도(1)	0점	경영자 신뢰도 낮음	
		1점	경영자 신뢰도 높음	
	○ 중간관리자 능력(1)	0점	중간관리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낮음	
1점		중간관리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높음		
○ 노사관계(1)	0점	노사관계가 건전하지 못함		
	1점	노사관계가 건전함		

협업제품의 기술성 및 시장성 (15)	○ 제품의 독자성(3)	1점	기존 제품과 대동소이함		
		2점	다소 혁신적인 제품임		
		3점	매우 혁신적인 제품임		
	○ 제품의 모방 용이성(4)	0점	기술적 모방이 매우 쉬움 (기술개발 필요 없음)		
		1점	기술적 모방이 다소 쉬움 (1년 미만의 기술개발 필요)		
		2점	기술적 모방이 다소 쉬움 (1년 이상 ~ 2년 미만의 기술개발 필요)		
		3점	기술적 모방이 다소 어려움 (2년 이상 ~ 3년 미만의 기술개발 필요)		
		4점	기술적 모방이 매우 어려움 (3년 이상의 기술개발 필요)		
	○ 시장 규모(4)	0점	30억원 미만		
		1점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2점	50억원 이상 ~ 70억원 미만		
		3점	7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4점	100억원 이상		
	○ 시장 점유율(예상)	○ 국내 시장	0점	1% 미만	
			1점	1% 이상 ~ 5% 미만	
2점			5% 이상 ~ 10% 미만		
3점			10% 이상 ~ 20% 미만		
4점			20% 이상		
○ 국외 시장		0점	1% 미만		
		1점	1% 이상 ~ 3% 미만		
		2점	3% 이상 ~ 5% 미만		
		3점	5% 이상 ~ 10% 미만		
		4점	10% 이상		
자금조달의 적정성(10)	○ 투자비 분담계획(3)	0점	투자비 없음		
		1점	수행업체 중 일부업체(50% 미만)만 투자비 부담		
		2점	수행업체 대부분(50% 이상)이 투자비 부담		
		3점	모든 수행업체가 적정수준으로 투자비 부담		
	○ 자체자금 부담비율(5) ※ 자체자금/총사업비×100	0점	0		
		1점	15 미만		
		2점	15 이상 ~ 30 미만		
		3점	30 이상 ~ 45 미만		
		4점	45 이상 ~ 60 미만		
		5점	60 이상		

	○ 민간 투자기관 조달비율 ※ 외부조달금/총사업비×100	0점 0		
		1점 20 미만		
		2점 20 이상		
<p>생산능력(10)</p> <p>※생산시설이 필요없는 협업체의 경우 5점 처리</p>	○ 설비의 적정성(2)	0점 생산설비 없음		
		1점 생산설비는 있으나, 협업체품과 연관성 없음		
		2점 협업체품과 직접 관련된 생산시설 있음		
	○ 품질관리 정도(3) (싱글 PPM, KS, GQ, ISO9000, ISO 14000, QS 9000 등 품질관련 인증)	0점 0개		
		1점 1개		
		2점 2개		
		3점 3개 이상		
	○ 공정능력 및 관리 수준(2)	0점 예상되는 제품수량을 맞추기에 공정능력 부족함		
		1점 공정능력은 충분하나, 공정관리기법의 수준은 낮음		
		2점 공정능력과 공정관리기법의 수준이 높음		
	○ 주생산품과 협업체품의 연관성(3)	0점 유사품목을 생산해 본 경험이 없음		
		1점 유사품목을 생산해 본 경험은 있으나, 현재 생산은 하지 않음		
		2점 유사품목을 생산해 본 경험이 있고, 현재 생산하고 있으나, 주력제품은 아님		
		3점 협업체품을 현재 생산하고 있으며, 주력제품임		
	<p>마케팅 능력(10)</p>	○ 고객 및 경쟁업체 파악 정도 (3)	0점 고객 니즈 및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 전무	
			1점 고객 니즈는 파악하고 있으나,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 없음	
2점 고객 니즈와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구체적인 분석은 미흡				
3점 고객 니즈와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가 있으며, 구체적인 분석도 충분				
○ 바이어 또는 판매채널 확보(2)		0점 바이어 또는 판매망 없음		
		1점 바이어 또는 판매망은 확보하고 있으나, 협업체품과 연관성 없음		
		2점 협업체품과 관련된 바이어 또는 판매망 확보		
○ 협업체품의 판로대책(2)		0점 판로대책 없음		
		1점 판로대책은 있으나, 구체성이 다소 미흡		
		2점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판로대책을 수립		

			0점	마케팅 경험 전무	
			1점	마케팅 경험은 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음	
			2점	마케팅 경험은 있고, 현재도 수행하고 있으나, 주력제품은 아님	
			3점	현재 수행하는 마케팅 제품이 주력 사업 분야임	
			0점	없음	
			1점	1개	
			2점	2개	
			3점	3개 이상	
			0점	개발장비 없음	
			1점	개발장비는 있으나, 협업제품과 연관성 없음	
			2점	협업제품과 관련된 개발장비 있음	
			1점	5인 미만	
			2점	5인 이상	
			0점	협업제품과 연관된 R&D 수행 경험 전무	
			1점	협업제품과 연관된 R&D 수행한 경험은 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음	
			2점	협업제품과 연관된 R&D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현재도 수행하고 있으나, 주력제품은 아님	
			3점	현재 협업제품과 연관된 R&D를 수행하고 있고, 주력 사업분야임	
			1점	현행 대비 10% 미만 증가	
			2점	10% 이상 ~ 20% 미만 증가	
			3점	20% 이상 ~ 35% 미만 증가	
			4점	35% 이상 ~ 50% 미만 증가	
			5점	50% 이상 증가	
			1점	내수대비 수출량 10% 미만	
			2점	내수대비 수출량 10% 이상 ~ 20% 미만	
			3점	내수대비 수출량 20% 이상 ~ 30% 미만	
			4점	내수대비 수출량 30% 이상 ~ 40% 미만	
			5점	내수대비 수출량 40% 이상	

협업 후 수행업체의 경쟁력	0점	현재보다 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
	1점	현재와 동일한 경쟁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
	2점	재무적 측면에서의 효과 정도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
	3점	재무적 측면의 성과와 기업 경쟁력이 동시에 향상될 것으로 예상
	4점	일부 수행업체가 해당분야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재무적 측면의 성과와 기업 경쟁력이 동시에 향상될 것으로 예상
	5점	모든 수행업체가 해당분야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재무적 측면의 성과와 기업 경쟁력이 동시에 향상될 것으로 예상

【별지 제4호 서식】

협업사업계획 심의평가서			
협업사업명			
추진주체		대표자	
참여업체		대표자	
참여업체		대표자	
참여업체		대표자	
총사업기간	20 . . ~ . . (. 개월)		
평가일자	20 . . .		
심사결과	<input type="checkbox"/> 승인, <input type="checkbox"/> 승인불가		
평가항목	평가의견		
1. 협업사업의 필요성 및 협업체 구성의 적절성			
2. 협업사업의 안정성			
3. 협업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4. 협업사업 추진능력			
5. 기대효과			
총 합 의 견			

위원 :

(인)

【별지 제4호 서식 붙임】

협업사업 심의위원회 참석자 명단

- 1. 개최일시 :
- 2. 회의장소 :
- 3. 참석자

성명	소속	직위	서명	비고

※ 회의록은 별지에 회의내용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중소기업간 협업사업계획 승인서
(농공상 융합분야*)

승 인 번 호 : 제 호

협업사업명 :

추진주체명 :

대표자성명 :

소 채 지 :

참여업체명 :

승 인 기 간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간 협업사업계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중 소 기 업 청 장

* 농공상 융합분야 협업사업계획일 경우 표시

【별지 제5-1호 서식】

Certificate of Collaborative Business

Certificate No :

Project :

Main Company :

Representative :

Company Address :

Partner Company :

Valid Date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company is a Collaborative busines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7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es.

Day Month Year

(직 인)

Administrator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별지 제6호 서식】

협업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				
협업사업명				
사업기간	20 ~ 20 (. . . . 개월)			
추진주체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홈페이지 주소	http://		
	대표자			
총괄책임자	성명		전화	
	소속/직위		F A X	
	전자우편		핸드폰	
기관명	대표자명	전화	협업참여분야	
참여업체				
참여업체				
참여업체				
<p>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협업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며,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의 무효, 승인 취소 등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월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00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p>				
<p>※ 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사업계획서 1부. 2.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1부. 3. 중소기업간 협업사업계획 승인서 원본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변경승인 심의평가서

협업사업명			
추진주체		대표자	
참여업체		대표자	
참여업체		대표자	
참여업체		대표자	
총사업기간	20 . . ~ 20 . . (개월)		
평가일자	20 . . .		
심사결과	<input type="checkbox"/> 승인, <input type="checkbox"/> 미승인		
변경승인신청 내용	검토 의견		
중 합 의 건			

위원 :

(인)

3. 사업비 투자 현황

총사업비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자체자금		정부지원금	
계획	실조달액	계획	실 투자액	계획	실 지원액

업체별 사업비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업체명	자체자금		정부지원	
	계획	실 투자액	계획	실 지원액

자체자금 투자 부진사유

업체명	부진사유	자체자금투자 완료예정일	점검의견

4. 사업비 사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용용도	구분	규 모	자금투자		
			계획(A)	사용액(B)	잔액(A-B)
시설 자금					
운전 자금					
합 계					

5. 사업 추진성과

① 추진주체 (업체명 :)

계획 대비 매출액 향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해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매출		수출		매출		수출		매출		수출		매출		수출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금 액																

주) 당해년도는 사업계획승인 년도이고, 1차년도는 승인후 다음연도

투자비 절감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별투자시(A)	협업추진결과(B)	투자비절감비율(A-B/A)
투자비			

매출원가절감

(단위 : %)

구 분	협업 추진전(A)	협업 추진후(B)	원가절감비율(A-B/A)
매출원가비중			

주) 매출액대비 매출원가비중(%)을 추진전과 추진후로 비교

종업원수 증가

구분	전년도	당해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종업원수(명)					

주) 당해년도는 사업계획승인 년도이고, 1차년도는 승인후 다음연도

② 참여업체 1 (업체명 :)

계획 대비 매출액 향상

(단위 : 백만원)

구분	당해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매출		수출		매출		수출		매출		수출		매출		수출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금액																				

주) 당해년도는 사업계획승인 년도이고, 1차년도는 승인후 다음연도

투자비 절감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별투자시(A)	협업추진결과(B)	투자비절감비율(A-B/A)
투자비			

매출원가절감

(단위 : %)

구 분	협업 추진전(A)	협업 추진후(B)	원가절감비율(A-B/A)
매출원가비중			

주) 매출액대비 매출원가비중(%)을 추진전과 추진후로 비교

종업원수 증가

구분	전년도	당해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종업원수(명)					

주) 당해년도는 사업계획승인 년도이고, 1차년도는 승인후 다음연도

③ 참여업체 2 (업체명 :)

계획 대비 매출액 향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해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매출		수출		매출		수출		매출		수출		매출		수출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금액																				

주) 당해년도는 사업계획승인 년도이고, 1차년도는 승인후 다음연도

투자비 절감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별투자시(A)	협업추진결과(B)	투자비절감비율(A-B/A)
투자비			

매출원가절감

(단위 : %)

구 분	협업 추진전(A)	협업 추진후(B)	원가절감비율(A-B/A)
매출원가비중			

주) 매출액대비 매출원가비중(%)을 추진전과 추진후로 비교

종업원수 증가

구분	전년도	당해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종업원수(명)					

주) 당해년도는 사업계획승인 년도이고, 1차년도는 승인후 다음연도

※ 협업사업 수행업체 전체를 점검 작성

5. 점검결과

점검항목	점검의견
협업체 운영현황	
협업사업 추진일정 대비 진척도	
사업비 투자 현황	
사업비 사용 현황	
사업 추진성과	
협업사업 추진 애로사항	
추가 정부지원 필요사항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대담자			(인)
			(인)
			(인)
조사자			(인)
			(인)
			(인)
조사년월일	20 년 월 일	방문장소	

【별지 제9호 서식】

**『중소기업간 협업사업계획』
완 료 보 고 서**

협업사업명			
추진주체		대표자	
참여업체		대표자	
참여업체		대표자	
참여업체		대표자	
사업기간	20 . . ~ 20 . . (개월)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하여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추진주체 대표 : (직인)

[확인자] 참여업체 대표 : (직인)

참여업체 대표 : (직인)

참여업체 대표 : (직인)

00지방중소기업청장 귀하

I

협업사업계획 요약서

1. 사업 개요

협업사업명		
사업기간	20 . . . ~ 20 . . .	
추진주체		
참여업체		
사업비 (백만원)	현 금	
	현 물	
	합 계	

2. 사업의 목표 및 내용

사업 목표	
사업 내용	

3. 기대효과(기대수익 등)

--

II

협업체 구성현황

1. 협업체 참여업체 현황

구 분	추진주체	참여업체	참여업체	참여업체
협업참여분야				
업 체 명				
대 표 자				
업 종				
위 치 (본사 및 분사)				
설 립 년 월 일				
자 산 및 자 본 (백만원)				
상 시 인 력(명)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부 채 비 율(%)				
자 기 자 본 비 율(%)				
연 락 처	전화			
	FAX			
	주 소			
	전자우편 (E-mail)			
	실무 책임자	성명		
소속				

- * 실무연락책임자의 소속부서, 성명, 전화, 주소 등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 * 상시종업원수 : 전년도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명시된 종업원수
- * 부채비율(%) : 부채총계/총자본 × 100
-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 × 100

2. 협업체 운영 추진체계

※ 협업체 수행 업체의 협업참여분야에 따른 역할에 대해 그림으로 표시하고 구체적으로 기술

Ⅲ

협업 사업 추진내용 및 성과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내용

기술성

국내외 관련 기술현황

기술의 우수성 및 독창성

기술의 파급효과 및 향후 활용방안

사업성

국내·외 시장규모	

국내·외 시장특성	

국내·외 주요 거래처 현황	

3. 사업 추진성과

① 추진주체 (업체명 :)

계획 대비 매출액 향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해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매출		수출		매출		수출		매출		수출		매출		수출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금 액																				

주) 당해년도는 사업계획승인 년도이고, 1차년도는 승인후 다음연도

투자비 절감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별투자시(A)	협업추진결과(B)	투자비절감비율(A-B/A)
투자비			

매출원가절감

(단위 : %)

구 분	협업 추진전(A)	협업 추진후(B)	원가절감비율(A-B/A)
매출원가비중			

주) 매출액대비 매출원가비중(%)을 추진전과 추진후로 비교

종업원수 증가

구분	전년도	당해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종업원수(명)					

주) 당해년도는 사업계획승인 년도이고, 1차년도는 승인후 다음연도

② 참여업체 1 (업체명 :)

계획 대비 매출액 향상

(단위 : 백만원)

구분	당해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매출		수출		매출		수출		매출		수출		매출		수출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금액																				

주) 당해년도는 사업계획승인 년도이고, 1차년도는 승인후 다음연도

투자비 절감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별투자시(A)	협업추진결과(B)	투자비절감비율(A-B/A)
투자비			

매출원가절감

(단위 : %)

구 분	협업 추진전(A)	협업 추진후(B)	원가절감비율(A-B/A)
매출원가비중			

주) 매출액대비 매출원가비중(%)을 추진전과 추진후로 비교

종업원수 증가

구분	전년도	당해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종업원수(명)					

주) 당해년도는 사업계획승인 년도이고, 1차년도는 승인후 다음연도

③ 참여업체 2 (업체명 :)

계획 대비 매출액 향상

(단위 : 백만원)

구분	당해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매출		수출		매출		수출		매출		수출		매출		수출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금액																	

주) 당해년도는 사업계획승인 년도이고, 1차년도는 승인후 다음연도

투자비 절감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별투자시(A)	협업추진결과(B)	투자비절감비율(A-B/A)
투자비			

매출원가절감

(단위 : %)

구 분	협업 추진전(A)	협업 추진후(B)	원가절감비율(A-B/A)
매출원가비중			

주) 매출액대비 매출원가비중(%)을 추진전과 추진후로 비교

종업원수 증가

구분	전년도	당해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종업원수(명)					

주) 당해년도는 사업계획승인 년도이고, 1차년도는 승인후 다음연도

※ 협업사업 수행업체 전체를 점검 작성

IV **향후 계획**

※ 향후 사업운영 방향, 자율적 협업체 운영 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

【별지 제10호 서식】

협업사업 추진성과 요약서

협업사업명				승인일자		
협업제품명				추진주체		
협업 구성업체명	대표자	전문기능	협업참여부문	소재지		
협업 경위 및 내용 설명 & 협업 효과						
협업 경위						
협업 효과	기술 고도화					
	제품 경쟁력					
	수익 증대					
	매출 추이	구 분	협업전	협업후		
		업체명	20 년	20 년	20 년	20 년
향후계획						

【참고】

협업체 구성 협약서

- 사업명 :
- 협약당사자
 - “갑” : 추진주체명 대 표 :
 - “을” : 참여업체명 대 표 :
 - “병” : 참여업체명 대 표 :
- 협약기간 : 20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사업비

구 분	현 금	현 물	합 계
추진주체			
참여업체			
참여업체			
합 계			

“갑”과 “을” 및 “병”은 협업체를 구성하여 000 협업사업계획(이하 “협업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협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협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다.

- 제2조(역할 및 의무)**
- ① “갑”과 “을” 및 “병”은 불임의 협업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갑”은 협업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위에 있어 협업체 대표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③ “갑”과 “을” 및 “병”은 상대방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본 협약상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독자적으로든 제3자와의 동업으로든 별도로 경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협업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갑”과 “을” 및 “병”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갑” : 00제품 생산
“을” : 00 제품 개발
“병” : 00 제품 판매
 - ⑤ “갑”과 “을” 및 “병”은 동 협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협의, 조정 등을 담당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⑥ “갑”과 “을” 및 “병”은 협약 상대방이 협업사업 수행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정보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협업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응하지 않을 수 있다.
 - ⑦ “갑”은 매월 00일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을” 및 “병”과 협업사업의 진행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⑧ “병”은 “갑” 또는 “을”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협업사업과 관련된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추가 소요비용 부담) “갑”과 “을” 및 “병”은 사업비 이외에 담당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다만, 협업사업 수행과 관련되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추가 소요비용은 상호간에 협의하여 부담을 결정한다.

제4조(제품공급단가 및 수익의 배분) ①“갑”은 “병”에게 00제품을 000원/개에 공급한다.

②협업사업에 따른 수익의 배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갑” : 00제품 판매 세전 순이익의 00%

“을” : 00제품 판매 세전 순이익의 00%

“병” : 00제품 판매 세전 순이익의 00%

③“병”은 00년 00월 00일부터 본 협약기간 중 매월 00일 “갑”과 “을”에게 제2항에 따른 수익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품질보증) ①협업사업 제품의 품질 이상으로 인한 소비자에 대한 배상(제조물책임, 환불, A/S)은 “갑”이 책임을 진다. 다만, 사후에 제품 설계의 하자로 인한 품질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을”이 책임을 지며, 이 경우 “을”은 “갑”의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②“갑”과 “을” 및 “병”은 협업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업체가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제6조(지적재산권 소유권) ①협약기간 중 협업사업 제품에 관련되어 발명·고안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은 “을”이 출원하여 소유하고, “갑”에게 전용실시권을 준다.

②협약 기간 완료 후에는 지적재산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해 “갑”과 “을”이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갑”과 “을” 및 “병”은 본 협약의 일부를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해약) ①“갑”과 “을” 및 “병”중 어느 하나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본 협약에서 규정한 제반 의무를 다하지 아니했을 경우 상대방은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갑”과 “을” 및 “병”중 어느 하나가 부도, 파산, 화의, 휴업, 폐업,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및 영업면허 또는 영업등록 취소 처분된 경우 상대방은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③“갑”과 “을” 및 “병”중 어느 하나가 협업사업 참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갑”과 “을” 및 “병”중 어느 하나가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협업사업 승인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⑤제1항내지 제4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경우, 해약에 책임이 있는 업체는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하며, 협업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본 협약상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독자적으로든 제3자와의 동업으로든 별도로 경영할 수 없다.

제9조(비밀보장) “갑”과 “을” 및 “병”은 본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사전 협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할 수 없고,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서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일반사항) ①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생길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분쟁을 조정한다.

제11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 및 “병”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년 월 일

붙임 : 000 협업사업계획 1부

(갑) 추진주체명 :

대 표 자 (인)

(을) 참여업체명 :

대 표 자 (인)

(병) 참여업체명 :

대 표 자 (인)